

《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020년 자체평가 결과》

1. 2020년 자체평가 실시

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은 「법학전문대학원 설치·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 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에 근거하여 2020년 자체평가를 실시하였음.

2. 평가영역별 자체평가 결과의 개요

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이 “제3주기 법학전문대학원 평가기준”에 따라 실시한 2020년 자체평가의 평가영역별(1.단위) 결과는 다음과 같음.

평가영역	평가결과	
	적 합	부적합
1. 학 생	○	
2. 교 원		○
3. 교육환경	○	
4. 교육과정	○	
5. 교육성과	○	

3. 평가지표별 불충족 사항

2020년 자체평가 결과,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이 평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평가지표(2.2.2.전임교원의 연구실적)는 본평가 시행일까지 충족할 예정임.